

참고2

청탁금지법 벌칙 유형

유형	위반행위	제재수준
부정 청탁 금지	-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	제재 없음
	-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	1천만원 이하 과태료
	-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	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
		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
	- 부정청탁 직무수행자	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금품 등 수수 금지	-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 초과 금품등 수수 공직자등 ·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(인도)하지 않은 공직자등 -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 (몰수·추징 대상)
	-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·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(인도)하지 않은 공직자등 -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
	-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	500만원 이하 과태료
기타	-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-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였던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	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	-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-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	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
	-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-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	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	- 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, 출석,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	3천만원 이하 과태료

